

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된 해석에 대한 성명과 권고되는 특허협력조약(PCT) 관행 변경사항

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국제사무국

1. WIPO 국제사무국의 견해상 특허협력조약(PCT) 규칙 82 의 4.1 이 현재 코로나 19 로 인한 전 세계적 혼란 상황에 적용되며, WIPO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관청들과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동 해석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
2. 위 규칙은 *불가항력*의 사유("전쟁, 혁명, 시민 소요, 파업, 천재지변, ...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")로 인해 PCT 기한(서류 제출 및/또는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)을 지키지 못한 책임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 WIPO 국제사무국의 입장은 현 팬데믹을 "천재지변, ...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"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¹
3.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(RO/IB)을 비롯한 WIPO 국제사무국은 코로나 19 관련 문제를 이유로 한 모든 PCT 규칙 82 의 4 신청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취급할 것이며, 바이러스가 이해 당사자의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. WIPO 국제사무국은 PCT 관청들과 기관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
4. PCT 규칙 82 의 4.1 이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중 하나는,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해당 국제출원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경우(PCT 조약 제 14 조(3)(a) 참조)입니다. 따라서, WIPO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은 그러한 모든 통지서(서식 PCT/RO/117)의 발급을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, WIPO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수리관청이 이와 같은 관행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^{2 3}
5. 또한, WIPO 국제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.

¹ 이 규칙의 혜택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, 적용 기한의 만료 후 6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관청에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이 규칙에 따라 면제되는지 여부의 결정은 그 해당 관청에 달려 있습니다.

² 국제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상실한 PCT 국제출원의 회복은 PCT 법적 틀 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.

³ 출원인이 등가액의 출원료 또는 조사료를 납부하는 경우, 해당 수수료의 금액으로는 해당 출원의 원출원일자에 유효한 PCT *뉴스레터*에 공지되어 있는 등가액을 적용합니다.

a. 적어도 한 달(이 기간은 추가로 연장 가능)은 더, 위 언급된 통지서를 만료 시점이 2 개월 이상 지난 기한과 관련해서만 발급할 것

b. 수리관청이 PCT 규칙 16 의 2.2 에 따른 가산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

[프란시스 거리
사무총장이 서명함]
2020 년 4 월 9 일(목)